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. 7. 15 선고 2021가단11488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망 A의 소송수계인

1. B
2. C
3. D
4. E
5. F

소송수계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택

피 고 1. G

2. H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혁

변 론 종 결 2021. 6. 17.

판 결 선 고 2021. 7. 15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들에게,

가. 전북 부안군 I 대 116㎡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, 8, 9, 10,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

부분 1㎡ 상수도 계량기를 철거하고,

- 나. 가항 기재 (ㄱ)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A은 '전북 부안군 J리(이하 'J리'라고만 한다) I 대 116㎡'에 관하여 1974. 6. 12.

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피고 G은 2000. 10. 5. 'K 시멘블록조 초가지붕 단층창고 34.16㎡ 목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56.2㎡'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피고 H은 2015. 7. 2. 'K 대 489㎡'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I 대 116㎡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, 8, 9, 10,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 부분에 피고들이 설치한 상수도 계량기가 있다.

라. A은 소 제기 이후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자녀 C, D, B, E, F이 있다. 자녀들이 소를 수계하였다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3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피고들은 권원 없이 A 소유 토지에 상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였다. 피고들은 A의 상속인인 소송수계인들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수도 계량기를 철거하고,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공현진

